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0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 양이원영・우원식・이탄희

김민석 • 이원택 • 민형배

용혜인 · 조정훈 · 아수진비

이소영 · 맹성규 · 윤재갑

윤미향 • 문진석 • 김원이

김수흥 · 남인순 · 한병도

김회재 · 최종윤 · 신정훈

이학영 · 서동용 · 박 정

박영순 · 임호선 · 정청래

김정호 · 김홍걸 · 김성환

박홍근 • 박완주 • 서영교

박재호ㆍ허 영ㆍ인재근

고용진 • 전혜숙 • 기동민

이동주 • 유후덕 • 김영배

장경태 · 노웅래 의원

(4491)

제안이유

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(IPCC)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.5℃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,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%

감축하고,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.

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 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, 석유화학 등 온실가 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 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.

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예산의 편성원칙에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 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제6호 신설).
- 나.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"탄소감축인지(炭素 減縮認知) 예산서"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는 "탄소감축인지 결산서"를 작성하도록 규정함(안 제26 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).
- 다. 기금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"탄소감축인지 기금 운용계획서"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"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"를 작성하도록 규정함(안 제68조의 3 및 제73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3"을 "제73조의4"로 한다.

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정부는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탄소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 "탄소감축인지(炭素減縮認知) 예산서"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에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탄소감축인지 예산서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탄소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탄소감축을

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탄소감축 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탄소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탄소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2,"를 "제68조의2, 제68조의3,"으로 한다.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8조의3(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의2.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
-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,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3조의3(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탄소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소감축인지 예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, 제34조제9호의2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3,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 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3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4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⑩ (생 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	
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	
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정부는 예산이 탄소감축에
	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
	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
	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26조의2(탄소감축인지 예산서
	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탄
	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-----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 <신 설> 10. ~ 16. (생략) <신 설>

석한 보고서[이하 "탄소감축인 지(炭素減縮認知) 예산서"라 한 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에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대효과, 성 과목표,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.
- ③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의 작 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~ 9. (현행과 같음) 9의2. 탄소감축인지 예산서 10. ~ 1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의2(탄소감축인지 결산서 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탄 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 서(이하 "탄소감축인지 결산서" 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탄소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탄소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전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, 제68조의2,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기금신설로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,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제68조의2,
제68조의3,
·
제68조의3(탄소감축인지 기금운
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
기금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
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
"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
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
<u>다.</u>
②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에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대
효과, 성과목표, 수혜분석 등을
포함하여야 한다.
③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
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
하으 대통련령으로 전하다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부서류)
1 1 11 7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탄소감축인지 기금운용계
획서
7. (현행과 같음)
제73조의3(탄소감축인지 기금결
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
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
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
보고서(이하 "탄소감축인지 기
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
야 한다.
②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
는 집행실적, 탄소감축 효과분

	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
	<u>한다.</u>
제73조의3(중장기 기금재정관리	제73조의4(중장기 기금재정관리
계획 등) (생 략)	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3과 같
	음)